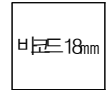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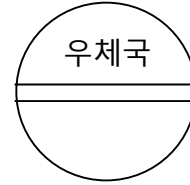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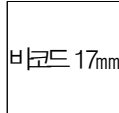


음성안내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주택 재산세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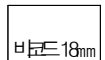
가 상 계 좌

온 라 인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주택 기분 재산세

음성
안내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원

[기 분]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	-----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전자납부 번호	
------------	--

납기 내:	까지
-------	----

세 목	납기 내 세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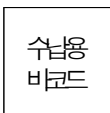
--	--

합 계	
-----	--

납기 후:	까지
-------	----

납기 후 세액	
---------	--

년 월 일



수납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시군구	년 (주택 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검 영수증
-----	---------------	---------------------------	----------------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	----	----	-----	------

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수납용



세 목	납기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납기 내
재산세(주택)				원
도시지역분				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원
지방교육세				까지
합 계				원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전자납부 번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구분	재 산세(주택)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공정시장 가액비율 (=)	60% (=)			
과세 표준 (×)	재 산세(주택) 과세 표준 (×)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	재 산세(주택) 산출세액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세부담상한 초과액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상한율	105%	110%	130%
(=)	(=)			
납부할 세액	재 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증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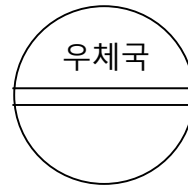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6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주택 재산세

받는 사람

바코드 17mm

우편반송용

자동납부 현황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년 주택 기본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mm

성명(법인명)

납부하실 금액

원

자동이체(납부)일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자동이체 세액공제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
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
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군구	년 (주택 기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세자
주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세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납기 기한
재산세	재산세(주택)		까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당자
합계			문의처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인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구분	재산세(주택)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공정시장 가액비율 (=)	60% (=)		
과세 표준 (×)	재산세(주택)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	재산세(주택) 산출세액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상한율	105%	11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증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6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20%

지방자치단체 활용란